

5.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도시계획국장 최재범)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p>○ 청원인들이 주장한 돈암동 535번지 일대는 현장을 답사해 보아도 이곳이 일반주거지역임에도 경관 보존이나 학교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풍치지구로 묶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p> <p>더구나 인근 아리랑로 일대는 '91년에 풍치지구를 해제하였는데 이곳은 아직도 풍치지구로 묶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p> <p>(정인섭의원)</p> | <p>○ 청원 요구지역은 풍치지구로 보존하여야 할 여러가지 지역여건 때문에 그대로 풍치지구로 유지코자 하는 것임.</p> |
| <p>○ 이 지역은 경사 지고 건물들도 소형건물로서 저소득시민의 생활 지원차원에서도 풍치지구 해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은 의지를 가지고 시 자체에서 해제할 뜻이 있나?(김형근의원)</p> | <p>○ 시에서 현재 24개의 풍치지구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전지역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p> |
| <p>○ 풍치지구를 해제 못 한다면 재산의 피해를 받는 정도에 맞는 적당한 보상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홍진구의원)</p> | <p>○ 도시계획운영상 문제로서 깊이 연구할 과제로 사료됨.</p> |

6. 토론요지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음.

8.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조치 없음.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이 소필지에 집합된 노후소형건물로서 건물의 중·개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 이 지역은 비탈진 경사면에 주택가가 완성되어 풍치지구로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 이미 주변지역도 풍치지구에서 해제된 상태이므로 지형현황에 맞추어 주민 요구대로 풍치지구가 해제되도록 본청원을 채택코자 하는 것임.

남현동지역 공원용지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의 견 서

1. 심사경과

○ 청원자: 관악구 남현동 602-351 나태
정 외 4명

○ 소개의원: 이영춘 의원

성복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는 280필지의 대지에 약 280동에 이르는 건물이 밀집되어

| | |
|--|--|
| <p>○ 접수일자 : 1993.10. 2(접수번호 : 102번)</p> <p>○ 회부일자 : 1993.10. 5</p> <p>○ 상정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93.10.18) 상정, 심사 • 제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93.11. 8) 상정, 심사 •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94. 2.21) 상정, 의결 <p>2. 청원요지</p> <p>○ 관악구 남현동 512-2, 6, 7 접종지 930평, 산 57-12 임야 1,000평인 이 지역은 '78.12.26 공원 예정지로 책정(건설부고시 418호)되었다가 '89.3 일반주거 지역내 공원용지로 변경된 곳으로</p> <p>○ 약 50년 전부터 수십동의 무허가건물이 산재해 주변환경이 불량하며,</p> <p>○ 관악산자연공원과는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고 주택지에 둘러싸여 수목도 전혀 없는 삼각형모양의 땅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p> <p>○ 계속 방치할 경우 불법 무허가건물이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우범지대화 된다고 청원인 등은 주장하고 있으며,</p> <p>○ 관할구청인 관악구청에서도 해제의 타당성을 인정, 당해 공원용지의 해제를 요청한 바 있었고('92. 4. 8)</p> <p>○ 서울시의회에서도 본 공원용지를 해제하도록 청원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에도('92. 9. 5 제56회 임시회)</p> <p>○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뚜렷한 이유없이 해당사안을 부결한 것은 부당한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재산증식을 도모하는데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므로,</p> <p>○ 서울시의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청원함.</p> <p>3. 취지설명 요지(이영춘 의원)</p> <p>○ 본 청원대상 토지가 관악산 자연공원에</p> | <p>연접되어 있어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균린공원 지정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고, 해당구에서 공원시설 계획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함은 행정이 시민에게 재산권 제한을 강요하는 일면이 있다고 보며,</p> <p>○ 대상 토지내에는 기존 무허가건물 등이 산재되어 있는 사실상 대지의 현황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도시경관 저해요인의 해소와 시민의 생활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이 요구되고</p> <p>○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지방행정이 뒤따르게 해 줌으로써 시민이 정부정책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 볼.</p> <p>○ 더불어 '91.12.30 이후 5개월여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후 '92. 9. 5 시의회를 통과하여 해당 관악구청에 균린공원 용지해제를 요청하였는 바,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부결시켜 통보해 옴으로써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사안일하며 구태의연한 서울시행정에 경악과 분노를 느끼며,</p> <p>○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 합리성이 있고 해당구청의 재심의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함.</p> <p>4.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재경)</p> <p>【청원요지】</p> <p>○ 관악구 남현동 512-2 외 3필지 임야 등 6,349㎡는 관악산 자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용지로서 청원인 등은 지난 '92년에 이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주도록 요구하자,</p> <p>○ 서울시의회에서는 '92. 9. 5 이를 채택한 후, 서울시에 통보함에 따라</p> <p>○ 관할구인 관악구청에서 이 공원용지를 해제 입안하는 과정에서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부결한 것은 부당하니</p> <p>○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원용지 해제 계획안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p> |
|--|--|

| | |
|--|--|
| <p>회에 조치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p> <p>【검토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청원은 '92년도 시의회에서 심사시에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 현지를 답사하는 등 충분한 검토결과, 이 공원용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산 자연공원에 연접하여 또 다른 공원을 지정할 이유가 없고 - 서울시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공원기준면적보다 더 초과하여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점 - 그리고 그 지역이 지형 형편으로 보아 공원용지로서는 적당치 않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 공원용지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청원을 채택한 바 있었음. ○ 서울시에서는 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관악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원용지 해제를 입안토록 통보하여 ○ 관악구가 도시계획을 변경입안하는 과정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공원은 해제하는 것보다 그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계획 변경안을 부결시켰던 것을 알 수 있음. ○ 도시계획결정 관련법령을 보면 도시계획 | <p>법 제10조①항 및 ②항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계획입안권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의결사항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구청장은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따로 명시규정이 없음. ○ 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의회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직접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 청원인의 요구 내용대로 시의회가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공원용지 폐지안을 재심의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청원수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입안권과 결정권을 기관 분립하고 있어 국토공간계획 체계상 도시계획 결정권이 상위 절차임에도 입안권자의 동의 없이는 도시계획을 임의로 변경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
|--|--|

5.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도시계획국장 최재범)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구 남현동 512-2, 6, 7 등 잡종지 930평은 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처음부터 공원으로 잘못 지정된 것이며, 그 절차도 공무원들이 현지확인 없이 탁상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된 것 아닌가(신용길 의원) ○ 당초 청원에도 공원이 잘못 지정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해당 구청장의 의견까지 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공원용지지정은 현지 확인은 물론 모든 요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이 이해되는 범위내에서 지정되도록 하겠음. ○ 시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고 해당 구에서 해제입안하는 과정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황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 하 |

| 질의요지 | 답변요지 |
|--|---|
| <p>어 이 공원용지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제를 의결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해제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김종원 의원)</p> <p>○ 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공원용지를 지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해제하여 주도록 의결하여 시에 통보된 것인데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해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p> <p>시에서 해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정인섭 의원)</p> | <p>고 해제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임.</p> <p>○ 도시계획결정의 입안과 결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시장이 입안을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는 처지이나 의회의 의지를 받들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음.</p> |
| <p>6. 토론요지 없음</p> <p>7.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음</p> <p>8. 심사결과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p> <p>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p> <p>10.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조차 불요함</p> <p>11. 의견서 관악구 남현동 512-2, 6, 7 잡종지 930평에 대한 공원용지 지정은 당초 이 공원용지 지정시부터 잘못 지정된 이유로서 -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정하였으며, - 현 공원용지는 관악산 자연공원에 연접하여 또 다른 공원을 지정할 이유가 없고, - 지형으로 보아 현지는 구릉이 되어 공원용지로서는 적당치 않을 뿐 아니라 - 서울시는 도시공원법에 정한 공원면적보다 초과하여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의</p> | <p>- 사유를 밝히어 이를 해제하여 주도록 의회에서 의결하여 시에 통보하여 주었음에도</p> <p>- 집행부에서는 명백한 이유없이 다만 공원용지를 현황대로 존치한 것이 좋다는 등 이유 하나만으로 의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p> <p>- 시의회에서 당초 의결한 대로 시에서 청원인이 요구한 관악구 남현동 512-2, 6, 7일대 930평의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주도록 하는 것임.</p> <p>.....</p> <p>신림동 59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p> |
| | <p>1. 심사경과</p> <p>○ 청원자 : 관악구 신림동 598-183 김삼주</p> <p>○ 소개의원 : 강정석 의원</p> <p>○ 접수일자 : 1993.11. 4(접수번호 : 109번)</p> <p>○ 회부일자 : 1993.11. 8</p> <p>○ 상정일자 :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 위원회('94. 2.21) 상정, 의결</p> <p>2. 청원요지</p> <p>○ 관악구 신림동 598번지 내 대지 20필지</p> |